

<p>제2021-139호 2021년 7월 20일(화)</p>	<p>시  보 여수시</p>	<p>시 정 지 표 시민공감 감동시정 균형있는 상생경제 사람중심 나눔복지 품격있는 문화관광 살기좋은 청주환경</p>
---------------------------------------	--	---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공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8 FAX) 659-5803

고 시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21-2023호 여수국가산업단지 삼동지구 분양 추가 공고(수의계약) 3
- 여수시 공고 제2021-2036호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사항 공고 18
- 여수시 공고 제2021-2039호 방치폐기물 제거 공고 19

기 타

회 람								
--------	--	--	--	--	--	--	--	--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여수국가산단(삼동지구) 분양 추가 공고(수의계약)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의3에 따라 여수국가산업단지(삼동지구) 지원시설용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양 추가 공고합니다.

2021. 7. 20.

여 수 시 장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1. 분양대상용지

구 분	필지	면적(m ²)	금액(천원)	매각방법
총 계	8필지	28197.7	16,213,192,050	
생산지원시설	1029-1	6,501.8	3,607,697,390	수의계약
	1029-2	5,938.7	3,247,661,570	
공공지원용지	1040-1	2,144.3	1,306,772,550	
	1040-2	2,203.0	1,335,925,500	
	1040-3	2,204.0	1,316,666,890	
	1040-4	1,918.2	1,145,934,310	
복합시설용지	1039-2	3,906.8	2,312,374,140	
	1039-1	3,380.9	1,940,159,700	

2. 분양대상 자격요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입주기업체 및 입주기업체 지원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업종은 입찰 및 입주가 제한되므로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지역본부에 사전 문의 바람 (☎ 070-8895-7993)

3. 입주대상 업종

가. 생산지원시설용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1 제5호 라목 -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마목에 한함)
※별표1 제10호 마목 - 연구소 (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사목에 한함)

※별표1 제19호 사목 - 도료류 판매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나목, 라목, 바목에 한함)

※별표1 제20호 나목, 라목, 바목 - 세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나. 공공지원시설용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1 제5호 라목 -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다. 복합시설용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

4. 입주제한업종

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거 입주기업체 및 입주기업체 지원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업종은 입주가 제한되므로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지역본부에 사전 문의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지역본부 ☎ 070-8895-7993}

5. 계약일정

가. 공고기간 : 2021. 7. 20. ~ 8. 3.(15일간)

나. 신청접수 : 2021. 7. 20.부터 - 여수시, 한국산업단지공단

다. 입주심사 : 2021. 7. 21.부터 -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지역본부

라. 입주심사결과통보 : 2021. 7. 23.부터 (산단공 → 신청업체, 여수시)

마. 분양계약체결 : 2021. 7. 26.부터 (여수시 ↔ 업체)

바. 입주계약체결 : 2021. 7. 28.부터 (산단공 ↔ 선정업체)

※ 분양계약금(10%)를 납부한 후 여수시(공영개발과)에서 토지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지역본부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함.

6. 계약 방법

가.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지역본부에서 심사를 거친 실수요자에 한하여 여수시와 매매계약 체결

나.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지역본부에 신청 접수 우선 순위에 의해 매매계약 체결

7. 구비서류

가. 입주심사 신청서류 접수 시(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지역본부)

- ① 입주계약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소정양식) 1부.
- ②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원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분양계약 체결 및 입주계약 체결 시

【분양계약 - 여수시】

- ①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원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②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 ③ 인감도장(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부)
- ④ 계약금 납입 영수증

【입주계약 -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지역본부】

- ① 분양계약금(분양대금의 10%) 납부영수증 지참
- ② 인감도장(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부)

8. 분양대금의 납부 방법

가. 계약금 : 계약체결일에 10%납부(입찰보증금을 계약금일부 대체)

나. 중도 1차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분양대금의 30%납부

다. 중도 2차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분양대금의 30%납부

라. 잔금 : 계약체결일로부터 9개월 이내 분양대금의 30%납부

마. 분양대금(중도금,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연체되면 연체일수에 따라 우리 시 지정금고의 일반대출금 연체금리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연체이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 : 전국 금융기관 창구 또는 전자납부

9. 토지사용승낙 및 소유권 이전

가. 토지사용 승낙 : 분양대금의 70%이상을 납부하고 잔금에 대하여 지급 보증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건축허가서류용 토지사용 승낙 가능.

나. 소유권 이전 : 분양대금 완납 시 소유권 이전을 원칙

10. 계약해제

- 가. 중도금이나 잔금의 납부를 6개월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
- 나. 기타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다. 분양계약서 제13조를 위반 하였을 경우, 제14조에 의거 분양계약금을 시에 귀속합니다.

11. 미분양토지 처리방안

○ 지원시설용지: 수의계약(선착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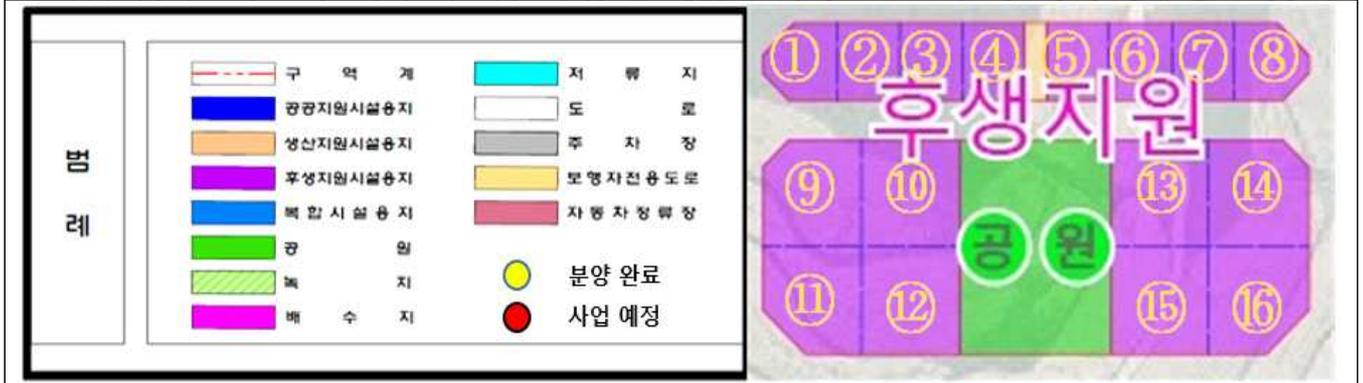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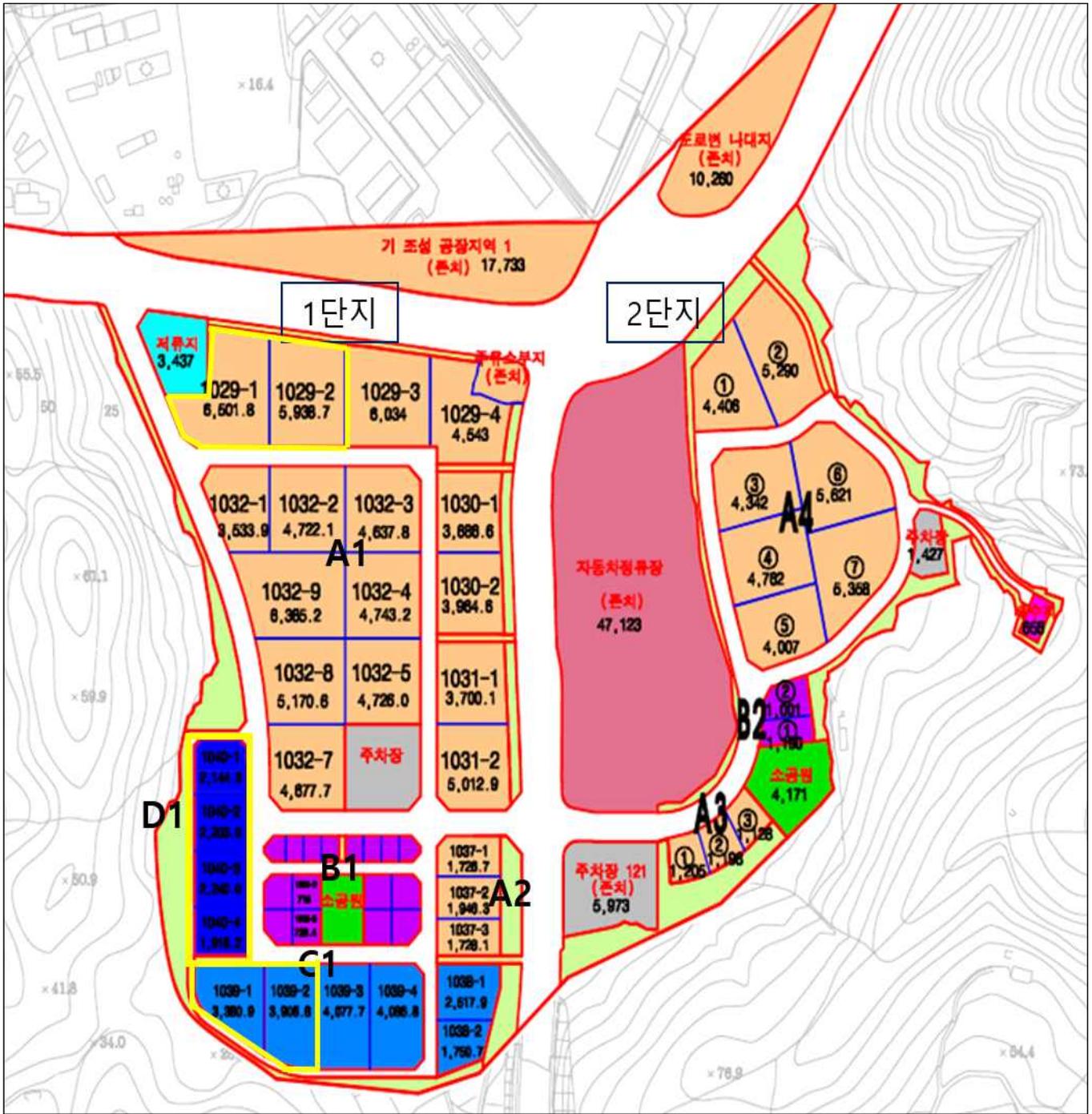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제2항(재산매각 시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로부터 1년동안만 적용)

12. 유의사항

- 가. 본 산업단지의 개발 및 실시계획, 환경·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의 협의내용, 토지 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와 건축 관련법규 등을 열람하거나 확인하여야 합니다.
- 나. 우수·오수·상수 시설은 건축공사 착공 전 조성공사 계획에 따라 설치·연결 하여야 하고 조성공사 현황을 감안하여 건축하여야 하며, 토지사용 중 도로, 상하수도, 경계석, 가로수 등의 공공시설물을 파손·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합니다.
- 다. 토지사용 시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사항과 환경·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계약 체결하는 경우 각자는 매매대금의 납부 등 모든 계약 내용에 대하여 연대 책임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마. 분양토지의 최종 잔금 납부약정일 또는 사용승낙일 중 빠른 날 이후 부과되는 각종세금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바. 분양토지에 당초 지하시설 및 바닥 콘크리트 포장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할 경우 매수인의 부담으로 제거하여야 합니다.
- 사. 분양토지의 대금이 완납되고 소유권 이전되기 전에 명의인 변경, 권리의무승계 등 계약자 변경사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아. 향후 본 공고문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발생될 시에는 별도 공고 없이 본 게시내용에 변경, 추가사항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 자. 소유권이전 비용은 분양계약자가 부담 합니다.
- 차. 여수국가산단 연관단지 삼동지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재생골재를 일부 성토용 재료로 사용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공영개발과(☎061-659-4586, 061-659-4592) 및 한국산업단지
공단 전남지역본부(☎070-8895-79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여수국가산업단지(삼동지구) 분양도면



2. 분양토지 필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면적 (㎡)	단가(㎡)	금 액(원)	비고
1	주삼동	1029-1	6,501.8	554,000	3,607,697,390	생산지원
2	주삼동	1029-2	5,938.7	546,000	3,247,661,570	
3	주삼동	1039-1	3,380.9	573,000	1,940,159,700	복합시설
4	주삼동	1039-2	3,906.8	591,000	2,312,374,140	
5	주삼동	1040-1	2,144.3	608,500	1,306,772,550	공공지원
6	주삼동	1040-2	2,203.0	605,500	1,335,925,500	
7	주삼동	1040-3	2,204.0	596,500	1,316,666,890	
8	주삼동	1040-4	1,918.2	596,500	1,145,934,310	

여수국가산업단지 연관단지(삼동지구)
분양 토지 계약서

여 수 시

여수국가산업단지 연관단지(삼동지구) 분양계약서

■ 입주기업체

업 체 명		대 표 자	
업 종			
용 지	m ²	건 축 면 적	m ²
연 면 적	m ²	부대시설면적	m ²
준공 예정일			

■ 분양받은 토지의 표시

소재지	번지	지정용도	지목	면적	비고
여수시 주삼동				m ²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위 여수국가산업단지(삼동지구)지원 시설용지에 대하여 관리기관인 여수시장(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입주업체인 (이하 “을”이라 칭한다)간에 아래와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성립과 효력) 을은 이 계약에 의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주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2조(매매대금 및 분양대금 납부방법) ① 갑은 목적용지를 다음표의 가격으로 을에게 매각하며, 을은 매매대금을 다음표의 납부방법에 따라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매매대금 : 금 원(금 원)				
대 금 납 부 방 법				
구 분	납부약정일	납 입 액	납부금액	미납액
계약보증금	계약일			
1회 할부금	계약일 3월이내			
2회 할부금	계약일 6월이내			
잔 금	계약일 9월이내			
합 계				
납 부 장 소	광주은행(여수시청 시금고), 납부방법 : 고지서 발급			

② **갑**이 **을**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의 변제충당의 순서는 납부약정일이 먼저 도래하는 할부금에서부터 지연손해금, 원금의 순에 의한다.

제3조(지연손해금)① **을**이 제2조의 매매대금(할부원금 및 할부이자를 말하며 정산금을 포함한다)을 납부약정일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지연기간에 지정금융기관(광주은행) 일반대출금 연체금리 최고율에 해당하는 년(15%)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갑**은 시중금리의 변동 등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제1항의 적용이율을 증·감할 수 있고 이를 사전에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지연손해금은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된 요율에 따라 각각 일할 계산하여 산정한다.

제4조(공공시설이용 및 부담금) **을**은 계약체결 시부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지 내 공동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이의 유지관리를 위한 공동부담금 및 관리비등 비용부담의 의무를 진다.

제5조(조세공과금의 부담)① 제2조에서 정한 최종할부금 납부약정일 이후의 조세 및 공과금은 **갑**의 명의로 부과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② **을**이 매매대금완납 전에 **갑**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득할 때에는 그 사용 승낙일을 제1항의 최종할부금 납부약정일로 본다.

제6조(의사표시 및 통지의무)① 계약의 해제 등 이 계약과 관련한 각종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이 계약체결 이후 할부이자율·연체이자율의 변경 및 토지사용가능시기의 지연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을**은 이 계약체결일 이후 성명·명칭 또는 주소·사무실의 소재지를 변경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갑**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갑**의 **을**에 대한 계약의 해제통고 등은 종전주소지로 발송하며 발송 후 15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며 이에 대한 불이익은 **갑**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또한 계약서상 주소가 부정확한 경우도 이와 같다.

제7조(목적용지의 사용)① **을**은 목적용지를 지정된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조성사업을 위한 각종 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지구단위계획 등을 포함한 실시계획상의 건축관련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을**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갑**은 변경부분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을**

은 동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을은 조성공사 완료 전에 건축 등 공사시행에 필요한 목적용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갑의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미납잔금에 대하여 갑이 정하는 담보를 제공한 경우와 또는 분양대금 70%이상을 납부하였을 시 갑은 매매대금 완납전이라도 용지를 사용 승인 할 수 있다.

제8조(면적기준 및 정산)① 당해 목적용지의 면적은 준공 후 지적공부정리결과 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목적용지의 공급가격은 조성사업 후 당해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확정된 면적을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한다.

② 갑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확정측량성과 및 정산내역, 정산금 납부방법을 을에게 통보하기로 한다.

제9조(소유권 이전)① 갑은 을이 분양대금(정산금을 포함한다)을 완납한 후에 목적용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다. 다만, 조성사업 준공 전에 목적용지를 공급한 경우에는 조성사업 준공과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를 완료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다.

② 갑은 을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소유권이전에 따른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③ 을의 원인으로 분양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제비용 및 제세공과금은 을이 부담하며, 반환할 분양대금 중에서 공제한다.

제10조(담보권의 행사) 분양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목적용지에 대한 사용승낙 또는 소유권이전을 한 경우로서 을이 미납 잔대금을 약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갑은 제7조 제3항의 담보물에 대하여 그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협조하기로 한다.

제11조(기한이익의 상실)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을에게 제2조의 분할수납기간에 불구하고 미지급 잔금 전액을 즉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을이 매매대금을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갑이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을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자기 신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때

제12조(조성사업의 시행 등)① **을**이 조성사업준공 전에 목적용지를 공급받을 때에는 **을**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토지사용의 제한 기타 불이익을 수인하기로 한다. 이 경우 **을**의 불이익이 최소화 되도록 **갑**은 조성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조성공사의 지연으로 토지사용시기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갑**은 기 납부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제3조의 지연손해금 **을**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을**에게 지급하거나 **을**이 납부할 매매대금에서 차감하여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사업의 부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또는 정책의 변경
3. 태풍·해일·홍수·지진 등 불가항력의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
4. 문화재 발굴, 관련부처와의 협의지연 등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사업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기타 제1호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갑**의 귀책사유 없이 토지사용시기 등이 지연되는 경우

제13조(분양계약의 해지)① **을**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갑**은 **을**에 대하여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허위의 진술, 부실한 증빙자료의 제시, 담합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목적용지를 매수하였을 때
2. **을**이 목적용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때
3. **을**이 목적용지 및 공장 등을 **갑**의 동의 없이 불법양도하거나 임대한 때
4. **을**이 제11조 각호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갑**으로부터 전액 즉시 변제의 요구를 받고도 14일 이내 그 이행을 하지 않을 때
5. 착공이 가능한 날(공장착공 가능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6. **을**이 공장 등의 준공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사업을 휴지한 때

7.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2조 제1항에 해당되는 때

8. 기타 **을**의 귀책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

②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을**이 자신의 사정으로 스스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2. **갑**의 귀책사유로 토지사용시기 및 소유권 이전이 6월 이상 지연되어 계약목적 달성을 수 없는 경우, 다만, 제12조 제2항 단서 각호의 1의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이 계약체결이후 **갑** 또는 **을**의 귀책사유 없이 제12조 제2항 단서 각호의 1의 사유 등으로 이 계약의 순조로운 이행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은 협의하여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이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을**은 즉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에 의한 잔무처리와 관련한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즉시 중단하여야 하고, 목적용지를 이 계약체결 당시의 원상대로 회복하여야 하며, 소유권 이전등기 후에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소유권회복등기에 필요한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보증금·위약금 귀속)①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갑**은 **을**로부터 수납한 매매대금 중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을**에게 반환하며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제4항의 소유권 회복 비용 등 **을**이 부담할 비용은 **갑**이 **을**에게 반환하는 매매 대금에서 이를 공제하기로 한다.

② 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갑**은 **을**로부터 수납한 매매대금을 지급한다. 이때, **갑**은 위약금으로 계약보증금 상당액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나머지금액 및 제2항 매매대금을 **을**에게 지급 시는 실제 납부 일부터 환금일까지 지정금융기관(광주은행) 요구불 금리로 지급하되 관련세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④ 을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 없이 분양계약을 해약할 때에는 당초 분양 면적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11항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

제15조(공장의 건축) ① 을이 건설할 공장 및 기타시설의 착수시한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② 을이 공장 등 기타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갑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과 동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추가약정) 갑은 본 계약서 이외에 을이 본 계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속으로 별도 추가약정을 받을 수 있다.

위 각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 한다.

2021 년 월 일

“갑” 賣 渡 人 : 여 수 시 장 (인)

주소 : 여수시 시청로 1 (학동)

“을” 買 受 人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사항 공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사항을 공고합니다.

-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내역 -

면허 번호	연장 허가 번호	양식업의 종류 (양식방법)	면적 (ha)	양식장 위치	면허기간	연장허가 기 간	수산자원 조성금 (천원)	양 식 업 권 자		비고
								주 소	성 명	
11279	2021-15	패류양식 (가두리식)	3.0	남면 두라	2011.08.05. 2021.08.04.	2021.08.05. 2031.08.04.	-	여수시 남면 유송리	함구미 어촌계	

문의전화 : 061) 659-3931 여수시 어업생산과. 끝.

2021. 07. 20.

여 수 시 장

공유수면 내 방치물 제거 공고

우리시 공유수면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위험물(폐파이프)이 항해 선박 등에 해양사고 위험 등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오니 이의신청이나 문의사항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2021년 8월 3일(화)**까지 여수시 해양항만레저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7월 20일

여 수 시 장

1. 공 고 기 간 : 2021. 7. 20. ~ 2021. 8. 3.(14일간)

2. 제거대상 물건의 명칭 및 제원 : 폐파이프(고정형 수직 강관파이프)

3.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공유수면관리 및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의거 공고기간 경과 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공유수면 내에 선박 등(폐자재 및 그 밖의 물건)을 버리거나 방치한 행위자에 대하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해당 물건의 이해관계인(압류 및 저당권 설정자 등)은 공고 기한 내에 권리 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폐기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사항 : 문의사항은 여수시 해양항만레저과(☎061-659-3972)로 연락바랍니다.

제거대상 물건 내용

관리번호	명칭 및 제원	방치장소
2021-17	폐파이프 (고정형 수직 강관파이프)	거문도 고도 남동방 약 0.7마일 (34-01-18.82N / 127-20-12.08E)

여수시 공고 제 2021-2039호			
무 단 방 치 물 제 거 공 고			
발견장소	전라남도 여수시 거문도 고도 남동방 약0.7마일 (34-01-18.82N / 127-20-12.08E)		
물 건 제 원	폐파이프(고정형 수직 강관파이프)		
관 리 청	여수시청	관 리 번 호	제2021-17호
제거 예정일자	2021년 8월 3일 이후 (공고 종료 이후)		
제 거 방 법	해체 및 폐기처리(직권제거)		
공매장소 및 일시	-		
입찰 보증금	-		
			
위치도		현장사진	
<p>위 방치물은 공유수면의 효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항해시 충돌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2021년 8월 3일(화)까지 여수시 해양항만레저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2021년 7월 20일			
여 수 시 장			
(담당자 : 해양항만레저과 061-659-3972)			